

4

섬유 및 의류

섬유 양허

- 미국의 양허수준은 즉시철폐 비율이 수입액 기준 61%, 품목수 기준 87%이며, 스웨터(미국 관세율 32%), 양말(관세율 13.5%), 화섬 남성바지(관세율 28.2%) 등 우리 주력수출품목 상당수가 즉시 철폐
- 특히 스웨터(관세율 32%), 폴리에스텔 섬유(관세율 4.3%), 양말(관세율 13.5%) 및 남성셔츠(관세율 28%)등 164개는 즉시철폐

〈 양국 섬유 양허 결과 〉

(단위: 백만불, %)

	우리측					미 측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1,265	97.6	170	72	즉시	1,387	86.8	1,654	61.1
3년	7	0.5	32	13.4	3년	-	-	-	-
5년	24	1.9	35	14.6	5년	149	9.3	504	18.6
10년	-	-	-	-	10년	62	3.9	548	20.2
합계	1,296	100.0	236	100.0	합계	1,598	100.0	2,707	100.0

※ 수입액 : 2003-2005년 3개년 평균

〈 양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

	우리측	미 측
즉시	데님, 폴리아미드 장섬유사	스웨터, 양말, 화섬 단섬유
3년	셀룰로오스 장섬유, 유리섬유	-
5년	폴리아미드 강력사	폴리에스터 장섬유직물, 남자면셔츠
10년	-	화섬편직물일부, 타이어코드 직물

◆ 주요 섬유 품목 양허 결과 (대미 수출 1,000만불 이상 품목)

(단위: %, 불)

HS 8단위	품목명	관세율	미측양허	대미 수출액(03~05)
52085230	염색	6	5년	53,566,395
54022030	폴리에스터사	9	10년	53,282,919
54076199	폴리에스터직물	15	5년	61,161,770
55032000	폴리에스터섬유	4	즉시	139,544,057
59022000	타이어코드	6	10년	45,100,008
60041000	편직물	12	10년	80,482,277
60063200	편직물	10	10년	60,834,761
61013020	코트 및 자켓	28	즉시	10,572,118
61023020	코트 및 자켓	28	즉시	12,075,747
61034315	바지 스커트	28	즉시	13,414,181
61051000	남성 아우터 셔츠	20	10년	27,211,034
61052020	남성 아우터 셔츠	32	5년	34,191,044
61062020	브라우스	32	5년	17,011,525
61099010	언더셔츠	32	10년	12,000,272
61103030	스웨터	32	즉시	276,922,021
61112060	유아복	8	즉시	22,405,773
61159290	양말	14	즉시	134,468,076

HS 8단위	품목명	관세율	미측양허	대미 수출액(03~05)
61161055	장갑	13	즉시	12,246,791
62031190	신사복	18	즉시	17,150,319
62046335	여성바지스커트	29	5년	20,749,793
62053020	남성셔츠	28	즉시	134,242,817
62064030	브라우스	27	즉시	12,180,744
62143000	손수건 스카프	5	즉시	18,281,145
62151000	넥타이	7	즉시	17,276,554
63014000	모포와 여행용러그	9	즉시	36,412,338
63062290	텐트 및 캠프용품	9	즉시	13,230,308
65059060	모자	8	즉시	11,313,562

양자 긴급 조치 (제4.1조)

□ 양국은 섬유 및 의류 분야에 적용되는 양자 긴급 조치 제도를 도입

■ 발동 요건

- ① 한·미 FTA로 인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 ② 타방 당사국으로부터의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받는 섬유·의류 제품 수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급증이
- ③ 동종 또는 직접 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실제적 우려를 야기하는 경우

■ 조치 내용

- 피해의 방지·구제 및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내에서,

- ① 관세 감축의 정지 또는

② MFN 실행관세율까지 관세율 인상

- 조치 발동 시점의 MFN 실행관세율과 협정 발효일 직전의 MFN 실행관세율 중 낮은 것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 관세율 인상

■ 조치 기간

- 원칙적으로 2년 이하,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총 4년 이하)

■ 제도존속 기간

- 관세철폐 후 10년까지

■ 기타 사항

- 동일한 상품에 대해 재발동 금지

▣ 섬유 긴급 조치 시행시 상대국에게 보상 제공

-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긴급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 형태로 보상 제공

- 양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한정

- 양국이 긴급 조치 적용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긴급 조치의 무역효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진 관세 조치 가능

- 대상 상품 제한 없음

- ▣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협정에 따른 섬유 긴급 조치와 한미 FTA 제10장(무역구제) 상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WTO 협정에 따른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

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가)

(1) 일반 사항

- 섬유·의류 상품은 다음 두 가지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① 역내 원산지 재료만으로 당사국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 ② 비원산지 재료 사용시 제4장(섬유 및 의류) 부속서 4-가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제4장(섬유 및 의류)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규정이 적용

(2) 원사기준의 채택

- 섬유 및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으로서 원칙적으로 원사기준(yarn-forward rule) 채택
 - 원사기준에 따르면, 협정 당사국이 원산지인 ‘실’을 사용하여 직물을 제직 또는 편직하고 섬유 완제품을 재단·봉제해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참고: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예

61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 세번변경기준

☞ 원사기준
(언급된 세번의 재료는 원산지 제품이어야 함.)

☞ 주요공정기준

(3) 원사기준의 예외

▣ 원사기준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직물 및 의류 제품

- 견직물(5007), 리넨직물(5311), 합섬 여성재킷(6104.33, 6104.39) 및 합섬 남성셔츠(6205.30) 등의 품목에는 원사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해당 제품 생산시 비역내산 '실'을 사용하여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가능

▣ 섬유 비역내산 원사 사용이 가능한 경우

- 견사(5006), 비스코스 레이온사(5403.10, 5403.31, 5403.32, 5403.41) 등 원사의 경우, 섬유 완제품 생산에 투입시 비역내산을 사용해도 원산지 인정

원산지 판정 일반 기준 (제4.2조제7항 및 제8항)

(1) 최소허용수준

- ▣ 섬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상품의 총중량의 7퍼센트 이하일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단, 탄성사는 한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것을 사용해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2) 세트의 취급

- ▣ 섬유 세트를 구성하는 비원산지 상품의 총가치가 세트의 관세가 격의 10퍼센트 이하일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공급부족재료의 역외조달 허용 (부속서 4-나)

□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원사·원단(공급부족재료)에 대해서는 원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역외산의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

□ 공급부족재료 목록 등재 및 효과

-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시, 수입국이 상업적인 물량으로 시의적절하게 공급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거나, 이 요청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수입국은 그 섬유원료·원사·원단을 자국의 공급부족재료 목록에 등재

※ 이해관계자 : 당사국 정부, 섬유 또는 의류 구매·공급자 또는 그 잠재적 구매·공급자, 법률적 대리인

- 섬유·의류 제품 생산시 공급부족재료 목록에 등재된 섬유원료·원사·원단은 역외산을 사용하여도 최종제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부속서 4-가의 제11부의 규칙2와 규칙3)

□ 역외조달 가능 물량

■ 조달 가능 물량

- 방직용 섬유제품(제51·52·54·55·58·60류) : 매년 1억 SME
- 의류제품(제61·62류) : 매년 1억 SME

- 수출국의 생산자 등이 우회수출 등 불법행위 적발시, 수입국은 상기 1억 SME의 물량에서 불법행위 연루 물량의 3배까지 공제가능

※ SME (제곱미터 상당, Square Meter Equivalent) : 섬유·의류 제품의 계산단위를 제곱미터로 환산한 것

■ 존속기간

- 존속기간은 발효 후 5년이며 이후 협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

■ 미측 제도 현황

- 미국 섬유협정이행위원회(CITA: Committee for the Implementation of Textile Agreements)가 협정 부록4-나-1의 미국측 목록 등재를 위한 절차 마련

참고: 미국 공급부족재료 목록 등재 절차

1. 등재요청

- 요청자: 이해관계자
- 요청방법: 요청서 및 사실관계 확인증명을 이메일과 특송 2가지 방식으로 함께 송부(OTEXA.KOREA@trade.gov 및 Chairman, Committee of the Implementation of Textile Agreements, Room 3100, U.S. Department of Commerce, 14th Street and Constitution Avenue, NW, Washington DC 20230)
- 요청서 기재사항: ①해당제품에 대한 상세정보, ②요청자의 필요수량, ③해당재료 획득을 위한 합리적 노력에 대한 기술(접촉 공급자 및 주소, 접촉 인사, 구체 요청내용, 접촉일시, 미국 공급자 확인 등), ④대체제품, ⑤기타 정보

2. 요청 접수 결정

- 요청서 기재사항 등 검토 후, 요청의 반려/접수 여부를 요청수령(이메일, 특송 서류 모두 수령시) 후 2 영업일 내 결정하여, 이해관계자에 이메일로 통보(접수시 웹사이트에도 공지)

3. 이익제기(공급제안 제출) 및 반론 제출

- 등재요청에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해당재료에 대한 자신의 공급제안을 제출 가능(등재요청 번호, 수량, 생산능력/공급능력 증명 기재, 공급능력 증명, 미국 공급자 위치)
- 동 공급제안에 대해 여타 이해관계자도 반론 제출 가능

4. 목록 등재 결정

- 요청 수령 후 30영업일 내 요청대상 제품의 공급부족 여부를 결정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메일 통보, 웹사이트 게재
 - ※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30 영업일간 심의 연장
- 한·미 FTA 협정 부록 4-나-1상 목록에 추가·삭제 시 Federal Register에 게재
- 등재 후 목록 삭제 요청
- 목록 등재 6개월 경과 후 이해관계자가 CITA에 목록 삭제 요청 가능

연례 기업정보 제공 (제4.3조)

□ 연례 정보 제공

- 대미수출 섬유·의류 상품 및 원료 생산기업의 원산지 확인 관련 정보를 미측에 매년 제공
- 정보 제공 주체는 지식경제부이며, 업계단체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 가능(다만, 정보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조치필요)

■ 제공 대상 정보

- ①성명(명칭)주소(소유운영 설비 소재지 포함) ②전화번호 및 e-mail주소 ③소유경영진의 성명, 국적, 직위 ④ 근로자수 및 업무 ⑤생산제품에 대한 설명 및 생산능력 ⑥보유설비 현황 ⑦주당 설비가동시간 ⑧원료공급처 ⑨미국내 고객 정보
- 미국내 수입처와 직거래하지 않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정보(설비가동 시간, 원료공급처, 미국내 수입처)를 제공 대상에서 배제하고, 최종재 생산기업에 의한 일괄제출도 가능토록 규정

■ 비밀 유지

- 비밀로 지정된 제공 정보에 대해서 협정 제7.6조상 비밀유지의무
 - ※ 협정 제7.6조 상 비밀유지 의무 : 정보제공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서면으로 보장하고,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 거부 가능

원산지 검증 (제4.3조)

■ 간접 검증 원칙

- 섬유·의류 제품의 원산지 검증 방식으로 수입국 정부의 요청에 의한 수출국 정부의 원산지 검증(이른바 간접검증)을 규정
 - ※ 직접검증의 경우 수출국에서 수입국이 직접 검증 수행
- 수출국 정부는 수입국 정부 요청시 다음에 대한 원산지 검증 수행
 - 섬유·의류 상품의 원산지 신청이 정확한지에 대한 검증
(특혜관세 신청 여부와 무관)

-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섬유·의류 무역에 관한 불법행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증

■ 현장 방문

- 수입국 정부는 수출국 정부에 의한 원산지 간접 검증을 지원할 수 있으며, 검증 지원의 한 형태로 ‘공동 현장 방문’ 가능
 - 공동 현장 방문은 사전 통보 없이 수행되나, 실사 대상자의 현장 동의를 요하며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실사 진행 불가
 - 다만, 실사 대상자의 실사 거부로 검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입국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 가능(특혜관세 거부 등)

■ 당사국은 환적된 섬유·의류 제품에 대한 조사요청이 있을시 조사를 위하여 노력

-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라는 신청과 무관한 단순 환적물품인 경우, 수출국은 수입국에 대하여 정보공유 이상의 협력의무 없음.

섬유 및 의류 무역 사안에 관한 위원회 (제4.4조)

- 섬유 및 의류 무역 사안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회합